



지원대상 |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

* 소득기준 : [응급/행정입원, 외래치료 지원]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가입자(소득기준 무관)
[발병초기]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 5,852천원 이하)

정신건강복지법
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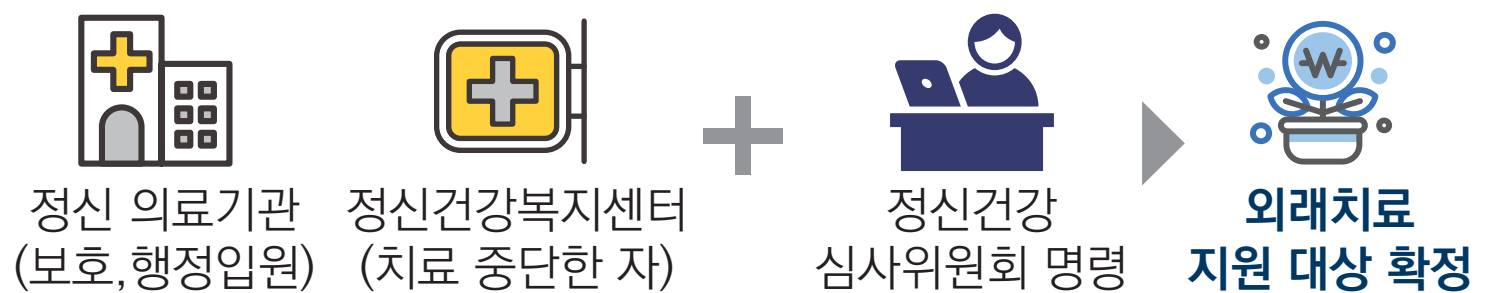
정신건강복지법
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치료비



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


정신건강복지법
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



* 발병 초기 최초진단

-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
- 해당진단: 조현병, 분열병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 정동장애(F31), 재발성 우울장애(F33), 지속성 기분장애(F34)

지원내용 |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

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)

신청기간 |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신청장소 |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·정신건강복지센터